

제 341 회 임 시 회
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3. 08. 29.(화)

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---

의안번호	314
제안일자	2023. 08. 17.
회부일자	2023. 08. 22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  
전 문 위 원 실

#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최태림 의원 외 12명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.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.

## 3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발 및 추진, 국가 추진 정책에 대한 행·재정 효율성 확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(안 제3조).
-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도지사가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도지사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- 도지사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- 도지사가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-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.

#### 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관광진흥법」
-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
#### 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심사완료(입법정책담당관)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- 해당부서 의견 : 없음(지방시대정책과)
- 예산관련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(지방시대정책과)

#### 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3. 08. 22. ~ 08. 28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104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## 7. 검토의견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이 통합하여 제정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(시행 2023. 7. 10., 제정 2023. 6. 9.)의 시행에 따라,
- 기존 관련 조례인 「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(제정 2012. 5. 31.)와 「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(제정 2020. 6. 4.)를 폐지하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14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안 제2조는 조례의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, 이는 상위 법령인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조에 따라 ‘지방자치분권’, ‘지역균형발전’, ‘초광역권’, ‘기회발전특구’를 규정한 것입니다.
- 안 제3조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개발·추진,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, 기구·인력의 배치 및 예산

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, 안 제4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입니다.

- 안 제5조는 도지사도 하여금 2개 이상의 시도가 상호협력하여 설정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며,
- 안 제6조는 개인 및 법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관할 행정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·재정적 지원과 도세감면을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7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와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 및 기능별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10조는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·운영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을 지원하고, 전문적인 조사·연구, 관련 기관과의 역할 조정 및 연계·협력추진, 기회발전특구와 지역혁신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효율적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안 제11조는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,
- 안 12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발굴·추진을 규정하여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포럼, 조사, 관련 기관·단체 육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.

특히, 시군간 균형발전지표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은, 산업도시와 농업, 어업, 산림에 기반한 경북의 특성을 반영하여 22개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규정한 것으로, 전문적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본 조례의 시행과 제정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「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에 따른 행·재정적인 경과조치를 규정하여,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혼선과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## □ 종합의견

-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'수도권 집중화'가 갈수록 심화하여 2000~2021년간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50.8%에서 56.4%로 증가한 반면, 비수도권은 49.2%에서 43.6%로 감소하였고, 수도권 총부가가치(GRDP) 비중은 48.8%에서 52.9%로 늘었고, 비수도권 총부가가치 비중은 51.2%에서 47.1%로 줄었으며,

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도 2006년 대비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체 수 증가율이 수도권은 디지털 심화 정도가 높은(High) 산업이 47.6%로 가장 높은 반면, 비수도권은 중간-낮은(M-low) 산업이 39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<sup>1)</sup>,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도 수도권에서는 디지털 심화 정도가 높은 산업이 72.1%로 가장 많았고, 비수도권에서는 중간-낮은 산업이 62.8%로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(통계청 통계개발원, '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).

- 또한,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현황에서도 전국 228개 시·군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, 경북은 20개 시·군이 소멸위험지역(소멸위험진입 10, 소멸고위험 10)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(한국고용정보원,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, 통계로 본 지역고용).

1) 통계청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디지털 심화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했다. ICT 유·무형 투자의 집약도, ICT 중간재·서비스 구매 집약도, 직원 당 로봇 재고, 총 고용대비 ICT 전문가 수 등으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따졌다. 이를 통해 △산업분류를 낮은(Low) 디지털 심화 산업 △중간-낮은(Medium-low) 디지털 심화 산업 △중간-높은(Medium-high) 디지털 심화 산업 △높은(High) 디지털 심화 산업으로 나눴다.

- 이러한 결과는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, 인공지능이 바탕이 되는 4차 산업 분야에서도 비수도권인 경상북도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
  -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 경북만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여건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아울러 경북도내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아울러, 2023년 7월 10일 시행되는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